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이념과 목적) ① 대학원은 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인류 보편의 자유·평등·정의의 규범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함양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법학전문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대학원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기여의 품성을 배양하며, 법학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국내·외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지식의 실천적 적용능력과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을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교육목표)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1.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풍부한 교양과 깊은 이해를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2. 지식정보사회의 법조에 요청되는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과 실행
 3.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의 양성
 4.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의 실행과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전인적 관계 형성 도모
- 제 4 조 (교육과정) ① 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과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은 법학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전 2항의 과정에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교과목은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 제 5 조 (교원) ① 대학원의 교원은 본교 교원윤리강령, 교원연구윤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한다.
② 대학원의 교원은 본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개최하는 대학원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업

- 제 6 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단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하며,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이 정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 7 조 (수업일수와 방법)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강기간을 둘 수 있다.

- ③ 수업은 강의실 수업 이외에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 ④ 정규수업 이외에 계절수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수업일수의 관리, 휴강사유 및 보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3 장 입학과 학생선발

- 제 8 조 (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대학원의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 9 조 (입학전형) ①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에 따른 특성화선발을 포함한다.
- ② 입학전형 및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입학전형시행기준에 의한다.
- 제 10조 (입학 공정관리)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 이상은 대학원 소속이 아닌 교수 등 외부 인사이어야 한다.
- ③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의 공정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학전형에 관련된 사항
- ⑥ 입학공정관리 및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입학공정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 11조 (편입학과 재입학) ① 편입학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에서 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4 장 등록과 수강신청, 휴·복학 및 제적과 자퇴

- 제 12조 (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② 학생은 기본 수업연한인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3년,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2년까지는 등록하여야 한다.
- 제 13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② 본교의 학부 또는 다른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 관련 대학 및 대학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14조 (수강신청의 정정과 철회) ① 수강신청의 정정은 소정의 정정기간 내에 가능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과 폐강과목을 정정할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수강 신청 및 정정한다.
 ③ 수강신청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가 어려울 경우 6학점 이내에서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단, 수강교과목의 이수포기는 지정된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15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본교 부속병원장 내지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 제 16조 (군 입대 휴학)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 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 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제 17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1년(2학기)을 넘을 수 없다.
 ③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을 넘을 수 없다.
 ④ 군복무,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2항과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 제 18조 (복학·자퇴 등) 복학, 자퇴 등에 관하여는 학칙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학점취득 및 학사운영

- 제 19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특성화 과정으로 구성한다. 단계별 이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및 실습과정의 이수를 필수로 하며, 그 외 필수교과목을 포함한 제1항의 세부 교과목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일람에 의한다.
 ③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제3항의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 제 20조 (학기별 학점취득)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18학점(학생지도 학점 제외) 이내로 한다. 단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12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내로 한다.
 ③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학생지도 1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매 학기 연구지도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 21조 (학점 인정)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의 경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학점인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⑤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위과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22조 (시험과 응시자격, 출결관리)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 및 기말에 시행되며, 시험의 방식 등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 및 성적처리내규에서 정한다.

② 기말시험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사항은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23조 (성적평가)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성적평가는 출석, 참여,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성적평가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성적처리내규에서 정한다.

②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화되 D학점 이하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o	A-	B+	Bo	B-	C+	Co	C-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P : 합격, F : 불합격, I : 유보

⑤ 성적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

⑥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⑦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평점표기는 학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⑧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성적은 대학원의 성적처리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4조 (재수강) 전 조 제2항의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평균평점이 2.3 (등급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점은 4.0 (등급 A)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총 재수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5조 (성적경고)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각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경고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지도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적경고를 해제한다.

③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④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적한다.

제 26조 (전문과정 진입평가 등)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1학년도말 전문과정 진입 평가결과에 따라 유급 및 과락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 이외에 평가 결과에 비추어 학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의무수강, 보충강의, 학력진단평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생 전원 또는 해당 대학원생은 위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전문과정 진입시험에 결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실시하는 전문과정 진입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문과정 진입평가 등에 관하여서는 학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7조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대학원 교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관하여는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8조 (유급) ① 유급의 대상자는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이하인 자로 한다.

②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o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된다.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 6 장 수료 및 학위취득

제 29조 (수료학점)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94 학점(학생지도, 공익봉사 학점 제외)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36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0조 (학위취득요건)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전 조 제1항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취득 이외에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및 그 외 소정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생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수료학점의 취득, 학위논문심사 합격 등 석사·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31조 (전문, 특성화 인증서)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소정의 교과목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 대학원장은 [별지서식 1]에 따른 전문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가 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에 따른 Global Legal Practice(국제법무, 이하 GLP라 한다)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대학원장은 특성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지서식 2]에 따른 특성화 전문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받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특성화위원회가 결정하며, 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 세부과정이 표기된다.

1. 국제비즈니스법무
2. 국제통상법무
3. 기타 특성화위원회에서 인정한 세부과정

제 7 장 학생지도, 도서관이용과 장학금 등

제 32조 (학생지도 및 지도교수) ①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 생활과 진로 등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며, 학생은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지침에서 정한다.

② 대학원은 학생지도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지도 등 학생지도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학생지도센터 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학생의 지도 및 지도교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사운영규정과 석사·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33조 (도서관) ① 대학원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학전문도서관은 학생부원장이 관리하며, 1인 이상의 1급 사서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사서 및 보조인력을 둔다.

③ 법학전문도서관은 전문 법학교육을 행하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장서 및 매체의 확보, 체계화, 국제화를 위한 계획과 조직,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④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도서관 조직과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본교의 도서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4조 (장학금) ①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사회취약계층과 성적우수자의 수혜비율이 수혜금액 기준으로 8:2

- 비율을 유지하며,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에 의한다.
- 제 35조 (복지) 대학원은 장애학생, 여성 기타 소수자의 학교생활 및 진로·취업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 36조 (기숙사) ① 대학원은 전용기숙사를 두며, 독립한 건물 또는 본교 기숙사의 일부를 전용기숙사로 한다.
② 기숙사는 대학원생이 법학교육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 37조 (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규정한다.
③ 대학원은 학술지 간행, 동아리 활동 기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 제 38조 (포상과 징계 등) 대학원생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의한다.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생

- 제 39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별지서식 3]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 40조 (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최소 12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디플로마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대학원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발전위원회

- 제 41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법학연구원 원장, 학생지도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일반교과, 전문·특성화교과, 법조실무교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10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42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및 산하 위원회)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산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학생지도센터장 및 일반교과, 전문·특성화교과, 법조실무교과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3조 (특별위원회) ① 대학원은 GLP 특성화 계획의 수립·보완,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산하에 특성화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은 각종 학위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산하에 학위과정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원은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 국제화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교육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4조 (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5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과 연구, 학생복지, 교육시설 및 지원체제 등 대학원 전반에 걸쳐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원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46조 (발전위원회) 대학원은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의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구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위원회를 둔다.

제 10장 준용규정

제 47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대학원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본인가를 얻은 때로부터 대학원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6조 개정)
- 2. (경과조치) 제24조(재수강)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개정), (제28조 신설 및 제6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개정, 제30조 내지 제47조 조번호 변경), (제23조 개정)
- 2. (경과조치) 제24조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0조 개정)

[별표 1] 단계별 이수체계

	기초과정	전문·특성화 과정			
	교과 구분	윤리와 일반교양 교과	탐색교과	전문과정 공통교과	전문과정 심화교과
기초법과 전문교양 교과		실무전문교과			
법학 기본교과		특성화(GLP) 공통교과		특성화(GLP) 심화교과	특성화(GLP) 통합교과
실무 기본교과		특성화(GLP)실무교과			

[별지서식 1] 전문 인증서

제 〇〇〇 호

인 증 서

〇 〇 〇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요건에 따라 전문과정 (〇〇〇〇〇〇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〇〇〇박사 〇 〇 〇

[별지서식 2] 특성화 전문인증서

제 〇〇〇 호

인 증 서

○ ○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요건에 따라 Global Legal Practice (〇〇〇〇〇〇)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〇〇〇박사 ○ ○ ○

[별지서식 3] 공개강좌 이수증서

제 〇〇〇 호

이 수 증

〇 〇 〇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전문대학원 공개강좌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〇〇〇박사 〇 〇 〇

[별지서식 4] 연구과정 이수증명서

제 〇〇〇 호

이 수 증

〇 〇 〇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전문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〇〇〇박사 〇 〇 〇

[별지서식 4-2] 연구과정 이수증명서

제 〇〇〇 호

이 수 증

〇 〇 〇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전문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교육과정(〇〇〇〇〇〇 전공)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〇〇〇박사 〇 〇 〇